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필수수산물자재 구매 지원을 통한 어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03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취지 검토	4
2. 총괄 검토의견	10
IV . 주요 조문별 검토	15
1.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15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안 제6조부터 제8조)	19
3. 벌칙(안 제12조)	22
4. 그 밖의 제정사항(안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	24
[참고자료]	27

I. 제안경위

1.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5인
2. 제안일: 2025. 4. 7.
3. 회부일: 2025.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원에서 2023년 6,247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자재와 전기·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산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수산자재 및 에너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가소득의 증대와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및 어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자재 등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수산자재 등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

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Ⅲ.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취지 검토

(1) 제정안의 발의배경

- 현재 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고유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도 확대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추이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급격히 상승하여 2023년 일시 하락하였으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19년, 2020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제유가(두바이)(\$/배럴)		63.5	52.3	69.4	96.4	82.1
유연탄(전력용연료탄)(\$/톤)		78.1	61.0	141.8	360.1	172.8
천연가스 수입가격(\$/톤)		505.4	390.1	550.8	1053.5	781.9
비 료 원 료	요소(\$/톤)	313	289	445	813	265
	인산이암모늄(\$/톤)	380	326	552	910	455
	염화칼륨(\$/톤)	350	296	317	776	297
	암모니아(\$/톤)	289	272	546	948	330
사 료 용 공 급 물	밀(\$/톤)	181.8	201.9	258.2	330.3	237.2
	대두박(\$/톤)	337.3	353.8	422.2	487.8	485.0
	옥수수(\$/톤)	151.7	143.3	225.3	272.8	222.5

자료: 해양수산부

- 면세유, 농사용 전기, 미끼, 배합사료 등 수산자재의 가격도 상승하여 2019년 829원/ℓ 이던 면세유(경유)가 2023년에는 1,205원/ℓ 으로, 농사용 전기는 39.2원/kwh에서 53원/kwh으로, 배합사료는 2,033원/kg에서 2,399원/kg으로 인상되었음.

[표] 필수수산자재 가격 동향('19~'23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면세유 (원/ℓ)	경유	829	688	829	1,396	1,205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등유	802	675	783	1,296	1,196	
	휘발유	771	650	796	1,248	1,073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원/kwh) * 농사용(乙) 저압 기준		39.2	39.2	34.2	46.5	53	각 년도별 전력 판매액/사용량
미끼(뽕치, (원/kg))		24,000	31,000	45,000	48,000	56,000	수협 판매가격 (제주시수협)
종자	넙치 (원/kg)	332	332	345	378	421	종자업체 판매가격 (넙치·우럭·전복- KMI, 흰다리새우- 협회)
	우럭 (원/kg)	123	113	136	152	124	
	전복 (원/kg)	289	298	286	303	305	
	흰다리새우 (원/kg)	8	8	8	8	10	
수산용의약품 (항생제, 339개) (원/kg)		21,759	20,910	20,043	20,765	21,194	대한수산질병 관리사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배합사료 가격 (수협)(원/kg)		2,033	2,033	2,033	2,178	2,399	수협사료

자료: 해양수산부

- 원자재 등 가격 상승과 함께 어가 경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뜻하는 연간 어업경영비¹⁾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의 경우 4,860만 원이었던 어업경영비가 2024년에는 5,990만원으로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어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 어업지출 현금 및 현물지출 평가액,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액, 미사용 구입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함.

[표] 어업경영비 변화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어업경영비 합계	어로지출 ¹⁾	양식지출 ²⁾
'14	25,639	12,046	13,592
'15	27,567	11,443	16,124
'16	28,174	10,889	17,285
'17	28,372	10,843	17,529
'18	46,955	18,770	28,185
'19	48,589	19,452	29,137
'20	53,596	21,030	32,566
'21	57,396	22,272	35,124
'22	62,477	24,372	38,104
'23	57,041	25,661	31,380
'24	59,891	24,161	35,730

주 1)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대, 노무비, 광열비, 보험료, 조세 및 이자 등

2) 양식지출: 종묘비, 사료비, 노무비, 광열비, 임차료, 보험료, 조세 및 이자 등

자료: 해양수산부

□ 그 밖에 통계청이 2025년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어가소득²⁾은 2014년 4,101만원에서 2024년 6,365만원으로 2,263만원(55%)증가하여 상당한 소득 신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어가의 평균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3,564만원에서 7,082만원으로 3,518만원(98%) 증가해 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 신장을 크게 초과하는 등 어업인의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어가 평균부채는 7,083만원으로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농가부채(4,502만원)을 상회함.

2)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됨.

[어가소득 = 어업소득(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 어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표] 어가소득 변화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어가소득	어업총수입	어업경영비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4	41,015	46,626	25,639	11,897	4,341	3,790
'15	43,895	50,653	27,567	11,728	5,079	4,002
'16	47,077	54,772	28,174	11,551	5,479	3,448
'17	49,016	55,064	28,372	12,576	6,055	3,693
'18	51,836	72,625	46,955	13,523	10,193	2,450
'19	48,415	69,260	48,589	13,326	11,220	3,198
'20	53,187	76,312	53,596	12,959	14,331	3,181
'21	52,392	77,072	57,396	14,313	15,711	2,693
'22	52,911	83,198	62,477	12,685	17,131	2,373
'23	54,779	78,456	57,041	14,632	16,190	2,544
'24	63,652	87,776	59,891	15,362	17,566	2,839

자료: 어가경제조사(통계청)

[표] 어가부채 변화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어가부채 합계	어업용 부채	어업용이외 부채
'10	35,640	18,277	17,364
'11	37,862	18,631	19,230
'12	39,518	20,177	19,341
'13	40,422	20,689	19,733
'14	41,404	21,413	19,991
'15	41,645	21,143	20,501
'16	42,870	21,485	21,385
'17	42,452	21,525	20,927
'18	61,004	37,428	23,576
'19	63,493	38,914	24,579
'20	63,903	38,840	25,063
'21	64,397	41,755	22,642
'22	59,776	38,980	20,796
'23	66,512	43,026	23,487
'24	70,826	43,958	26,868

자료: 어가경제조사(통계청)

□ 제정안은 이처럼 대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산자재 구입비용이 상승하는 등 어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의 가격인상분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고, 어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및 수출활성화 등의 어업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제정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 하에 12개 조문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필수적인 에너지 및 수산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어가 소득의 증대 등 목적
제2조(정의)	어업인 및 필수수산자재 정의 규정 (유류·전기·미끼·종자·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및 수산자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필수수산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비한 어업경영 안정 대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노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대해 이 법이 일반법

조 문	주 요 내 용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6조(지원대상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물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자격 및 조건은 시행령 위임)
제7조(지원기준)	직전 3개년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 지원
제8조(필수수산물구입비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9조(필수수산물구입비 가격 등의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물구입비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결과 공표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의 발생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방지대책 수립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제12조(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공포 후 6개월 시행

2. 총괄 검토의견

- 정부는 어업인의 유류비 및 전기료 부담과 관련하여 예산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나, 통상 국회 단계의 예산 증액에 따른 한시적·단편적 지원이었고 체계적·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원은 아니었음.

[표] 유류비 및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 개요·대상: 어업용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어업용 면세경유가격*이 기준가격(1,070원/ℓ)보다 높을 경우 초과분의 50% 보조 ○ 지원기간: 2024년 1~6월 (민간경상보조) ○ 시행주체: 수협중앙회 ○ '24년 예산: 45억 700만원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 개요·대상: 농사용(乙)전력 사용 어업인에게 전기요금 감면 ○ 지원내용: 어업인당 농사용(乙) 전기요금을 최대 44만원까지 감면 ○ 지원기간: 2024년 2~12월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요약

또한, 현재 유류비 및 전기료 등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정세 불안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개별 어업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① 우선, 제정안 입법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면세유, 전기, 미끼 등 필수수산자재(2023년 가격 기준)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연간 약 2,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³⁾.

[표] 2023년 기준 품목별 정부지원액(추정) 산출근거

구분	직 전 3개년 평균가격	'23년 가격	가격 상승률	'23년 산업규모 (단위: 억원)	'23년 기준 정부 지원액 (단위: 억원)
면세유	971(원/ℓ)	1,205(원/ℓ)	약 24.1%	9,057	1,528
농사용전기	39.97(원/kwh)	53(원/kwh)	약 32.6%	2,050	468
미끼(뽕치)	41,333(원/kg)	56,000(원/kg)	약 35.5%	191	47
종자(넙치 기준)	351.67(원/kg)	421(원/kg)	약 19.7%	2,922	403
수산용의약품	20,572(원/kg)	21,194(원/kg)	약 3.02%	406	9
배합사료	2,081(원/kg)	2,399(원/kg)	약 15.3%	2,046	219
합 계					2,674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당 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추계자료의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3) 산출근거 : '23년 품목별 가격상승률($\frac{\text{'23년 품목별가격} - (\text{'20년} \sim \text{'22년)품목별평균가격}}{(\text{'20년} \sim \text{'22년)품목별평균가격}} \times 100$) × '23년 품목별 산업규모 × 제정안 차액 보전을 70%

② 다음으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필수수산물자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유류비, 전기료 및 배합사료에 대한 예산사업을 과거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어업인 면세경유 공급을 위한 조세감면⁵⁾ 및 경영자금 등의 대출을 위한 수산정책자금⁶⁾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입법 시 현재 수행 중인 필수수산물자재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또한,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3.26)으로 국가 등이 국제 원자재 공급망의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⁷⁾ 기존 법률과의 관계 및 입법의 필요성

4)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사업 현황은 [참고 1] 참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6)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목록 및 개요는 [참고 2] 참조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의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른 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한편, 2022년 6월 (부분) 타결된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서는 금지보조금 유형으로 (i) 불법 어업에 가담한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ii) 과잉어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iii) 기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어업용 면세유’ 등은 현재 (2025.8.)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미합의 쟁점 사항에 해당하므로, 협상 경과를 확인하여 제정안의 입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⑤ 참고로 필수농자재에 관해서도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수산자재와 농자재는 사용방식 및 제반여건이 동일하지 않으나 1차 산업으로서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농·어업에 대한 지원 및 규율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농자재 비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추이를 함께 살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8) 현재 필수농자재 등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안)」 등 총 6건의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해당 제정안들에 대해서는 부처 등으로부터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WTO 협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에 해당하여 보조금으로 농자재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관련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수산자재 가격 인상
분 정률 지원 시 오히려 수산자재 업계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어
업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수산 기자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어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법안 취지는 바람직하나, 정부의 재
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IV. 주요 조문별 검토

1.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필수수산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법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및 수산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가 소득의 증대와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⁹⁾을 말한다. 2. “필수수산물”이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및 수산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나. 미끼, 동물의약품, 종자, 사료, 냉보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수산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입법 목적과 규율하려는 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해당 법률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써 일반적인 입법조치이나,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임.

안 제2조제2호는 “필수수산자재”를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및 수산자재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및 수산자재”로 정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염업·양식업·가공업·유통업의 대분류 하에 연료 및 원료 등에 속하는 유류·전기·미끼·사료·동물의약품 등을 필수수산자재로 예시할 수 있으나,

필수수산자재의 정의에 따라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연간 소요 예산 규모가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정의는 가급적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임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 및 범위를 가능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표] 필수수산물자재 예시

대분류	필수수산물자재	
	소분류	세분류
어업	연료	유류
		전기
	원료	미끼
염업	연료	면세유
		전기
양식	연료	면세유
		전기
	생산	사료
		동물의약품
		종자
가공	원료	전기
		유류
유통	원료	전기
		유류
	보관	어상자

자료: 해양수산부

□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에 따라 특정 사안을 규율하려는 제정안의 특별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이 법을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¹⁰⁾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¹¹⁾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제정안의 필요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제정안의 특수성과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더해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¹²⁾

[수정의견]

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수산자재의 지원에 관하여는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단서 신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안 제6조부터 제8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안 제6조), 필수수산물구입비 인상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안 제7조), 해당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13)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물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수산물구입비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지원 품목과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필수수산물구입비 지원금의 사용) 제6조에 따라 필수수산물구입비의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여 필수수산물자재 가격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6조제1항),

구체적으로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그 기준을 법문에 명시(안 제7조제1항)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2024년 기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는 총 7만 8,607개 소로 파악되고,¹⁴⁾ 2023년 기준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 및 미끼·종자·배합사료 등의 kg당 단가 등은 직전 3개 연도 평균가격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제정안은 지원대상의 자격·조건과 지원 품목 등을 다시금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수산물자재 지원과 관련한 핵심사항으로서 입법의 명확성과 정부 재정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문에서 그 대강의 기준을 직접 정하고, 시행령에는 구체적 세부사항만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4) 등록대상 어업경영체는 ① 어업인의 경우 어업·양식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기준 7만 7,516명이며, ② 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으로서 2024년 기준 1,091개소임.

[표] 필수수산물자재 가격동향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면세 유 (원/ ℓ)	경유	688	829	1,396	1,205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등유	675	783	1,296	1,196	
	휘발유	650	796	1,248	1,073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원/kwh) * 농사용(을) 저압 기준		39.2	34.2	46.5	53	각 년도별 전력 판매액/사용량
미끼(뽕치, (원/kg))		31,000	45,000	48,000	56,000	수협 판매가격 (제주시수협)
종자	넙치(원/kg)	332	345	378	421	중자업체 판매가격 (넙치·우럭·전복- KMI, 흰다리새우-협회)
	우럭(원/kg)	113	136	152	124	
	전복(원/kg)	298	286	303	305	
	흰다리새우(원/kg)	8	8	8	10	
수산물약품 (항생제.339개) (원/kg)		20,910	20,043	20,765	21,194	대한수산물병 관리사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배합사료 가격(수협)(원/kg)		2,033	2,033	2,178	2,399	수협사료

자료: 해양수산부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필수수산물자재 가격인상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정내용에 대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재정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안 제8조는 필수수산물자재 구입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3. 벌칙(안 제12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해당 금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원금이나 목적 외 용도 사용금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필수수산물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금지행위에 대한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겠음.

다만, 과태료는 형벌과는 구별되는 행정벌로서, 조제목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 규정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와 관련한 행정절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

우 부당지급 등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이익 등을 환수하며, 이후 제재부과금·가산금 부과 및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¹⁵⁾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할 때 필수수산자재 구매 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등에는 우선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지원금이나 목적외 용도 사용 금액의 ‘1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체계를 맞추는 방안에도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¹⁶⁾

1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이하 생략)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이하 생략)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하 생략)

16) 참고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규정만 두고 있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그 밖의 제정사항(안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안 제5조), 필수수산물자재 현황·가격(안 제9조) 및 위반행위 발생 현황 등(안 제10조)을 조사하도록 하며, 제정안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이는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규정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물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필수수산물자재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수산물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3. 필수수산물자재의 품목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필수수산물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필수수산물자재의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6. 필수수산물자재의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필수수산물자재등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수수산물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년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필수수산자재 가격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자재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수산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하는 행위
2. 제8조를 위반하여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제 정 안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필수수산자재 지원사업 현황

1. 필수수산자재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자재	세부사업(내역사업)	주요내용	법적근거	'24 예산
면세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 기준가격(1,070원/ℓ) 대비 초과분의 50% 지원	「수산업법」 제86조	4,507
전기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24)	농사용(을) 전력 사용 어업인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	「수산업법」 제93조	5,601
미끼	-	-	-	-
종자	-	-	-	-
동물의약품	-	-	-	-
배합사료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지원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수산업법」 제93조	10,123

2.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단위: kl)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79,789	1,140,745	1,035,529	915,686	921,345
경 유	955,167	1,010,697	912,721	805,518	814,381
휘발유	102,284	105,297	102,438	95,596	91,671
중 유	11,404	13,566	9,311	3,969	4,799
윤활유	8,035	8,074	7,861	6,935	6,871
L P G	2,899	3,111	3,198	3,668	3,623

3. 2025년 배합사료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담률(%)	주요내용	지원예산
합계	6개사업			48,81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안전성강화	국비 100	배합사료 유해물질 검사	361
	사용확대 기반구축	국비 100	배합사료사용확대를 위한 연구발등기반구축	2,149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새우 전용 배합사료 공장 건립비	1,000
	국립양식사료 연구소 건립	국비 100	배합사료 전문 연구기관 건립비	4,971
수산공익형 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국비100	배합사료 사용 어가 대상 생산비 상승분에 대한 공익형 직불금 지원	27,970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자금	이자 100 지원 (기준금리+대출금리)	배합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비 지원	10,123
양식어업지원 (융자)	배합사료공장 운영비 지원	운영비의 70% 융자지원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 운영자금 융자 지원	2,240

참고 2

수산정책자금 현황

자금 및 내용	대출 조건			'25년 공급규모	'25년 예산
	금리('25.2월 기준)	기간	한도		
일반 ① 양식어업 경영자금 : 양식어업 경영 시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고정* 또는 변동** * 어업인 2.5% 어업인 외 3.0% ** 어업인 2.47% 어업인 외 3.47%	1년 (최대 3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20,000억원	41,446백만원
일반 ②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 어선어업 및 천일염업 경영 시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고정* 또는 변동** * 어업인 2.5% 어업인 외 3.0% ** 어업인 2.47% 어업인 외 3.47%	1년 (최대 3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8,200억원	12,528백만원
일반 ③ 신고·마을·중요생산어업 경영자금 : 신고·마을중요생산 경영 시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고정* 또는 변동** * 2.0% ** 2.47%	1년 (최대 3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1,000억원	2,491백만원
일반 ④ 원양어업 경영자금 : 원양어업 경영 시 필요한 운영자금, 해외어장입어로 등을 대출					
	고정* * 원양어업법인 3.0%(단, 선박 안전 관련 수리·개조 시 2.0%)	1년 (최대 3년)	업체당 200억원	2,572억원	6,283백만원
특별 ⑤ 재해복구자금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자금을 대출					
	고정* * 1.5%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피해액 범위 내	44억원	2,785백만원
일반·특별 ⑥ 부채경감대책자금 : 부채 경감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금을 대출 - '04년 중장기분할 상환, '01년 연대보증피해, 수산업경영회생, 재해복구자금 전환('04년)					
	고정* * '04년 대책 관련자금 1.5% 수산업경영회생자금 1.0%	12·20년 (5년 거치 7·15년 분할)	회생에 필요한 최소자금	100억원	110백만원
일반 ⑦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 :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					
	고정* * 1.0%	2~3년 (패류 2년 기타 3년)	최대 3억원	1,400억원	10,123백만원
일반·특별 ⑧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 수산업 종사 청장년에게 사업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고정* 또는 변동** * 어업인후계자 1.5% 우수경영인 1.0% ** 어업인후계자 2.47%	15·25년 (5년 거치 10·20년 분할)	어업인후계자 5억원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1,080억원	17,055백만원
일반·특별 ⑨ 어촌정착지원자금 : 귀어인이 어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주택 자금 대출					
	고정 * 1.5%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창업 3억원 주택 0.75억원	900억원	11,629백만원
특별 ⑩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고정 * 1.0%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신설 64억원 증설·개보수 40억원	378억원	8,348백만원
합 계				3조 5,674억원	112,798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